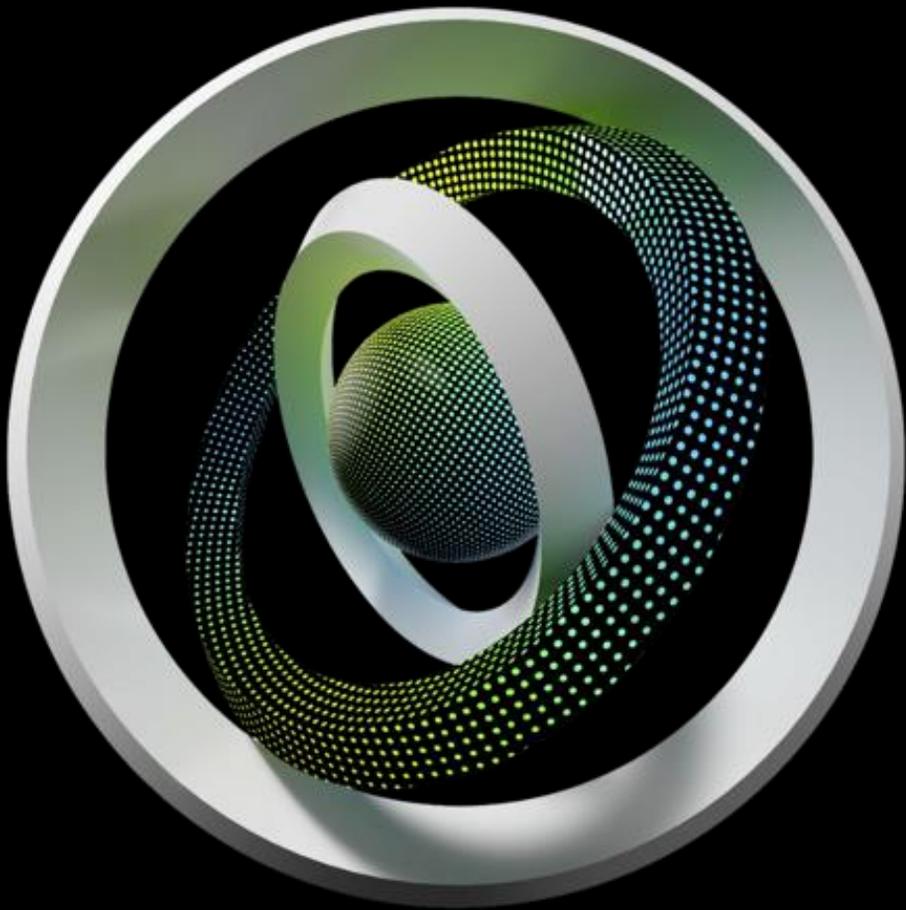


**Deloitte.**

## 세무뉴스

한국과 베트남간 사회보험 협정 이행에 관한  
지침

2024년 4월



# 한국과 베트남간 사회보험 협정 이행에 관한 지침

외교부의 2023년 12월 22일 제50/2023/TB-LPQT호 통보에 따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사회보험협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효된다.

이는 이 분야에서 양국 간 최초의 양자 협정이자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사회 보험에 관한 최초의 양자 협정이기도 한다.

체결된 협정은 양국 근로자가 양국 영토로 이주하여 일할 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상대방국 영토에서 근무하는 베트남과 한국 근로자에게 법적조건 결정 및 사회 보험료 지불과 관련하여 공정한 대우원칙을 보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대국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하는 양국 근로자는 양국 중 한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할 권리가 보장된다 (근로자 대상에 따름). 사회보험 이중납부 방지 규정에 더해, 양국 법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양국 근로자는 퇴직급여 산정 기준으로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간을 누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본 협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은 2024년 3월 29일 제862/BHXH-TST호 OL을 발표하였으며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OL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협정의 적용 대상

### 1. 파견 근로자 (\*):

-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등록하고 베트남 법규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하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고용주에 의해 다음과 같이 파견된다:
  - ✓ 고용주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근무함
  - ✓ 베트남 회사의 한국 지점이나 자회사에서 근무함
- 한국 고용주에 의해 베트남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도록 파견된 경우와 유사함

(\* 적용 가능한 파견 기간: 파견일로부터 **최소 60개월** (같은 고용주를 위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파견 기간이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

### 2. 현지 채용 근로자

- 한국에서 임시 거주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은 한국 국민연금법을 적용된다.
- 베트남에서 임시 거주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는 한국 국민: 해당 근로자는 한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기간 동안 한국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여전히 적용된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Alert for professional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 한국과 베트남간 사회보험 협정 이행에 관한 지침



### "사회보험 ("SI") 대상 증명서"의 발급 및 접수

	SI 증명서 발급	SI 증명서 접수
	한국에서 사회보험료 면제 신청의 목적	베트남에서 사회보험료 면제 신청의 목적
대상	파견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	파견된/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
신청서류	<p><b>근로자의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견 결정서</li> <li>TK1-TS 양식 신고서 (처음 가입자 또는 이미 SI 코드가 있지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가입자에 적용)</li> </ul> <p><b>파견 단체의 경우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K3-TS 양식 신고서</li> <li>해당 업체의 한국에 법적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 회사의 한국 지점 또는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li> <li>글로벌 사용자 보고서 및 의무보험 가입자 목록</li> </ul>	<p><b>근로자의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연금공단 ("NPS")에 의해 발급된 사회보험 증명서 원본.</li> <li>TK1-TS 양식 신고서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에 적용)</li> </ul> <p><b>단체의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K3-TS 양식 신고서</li> <li>글로벌 사용자 보고서 및 의무보험 가입자 목록</li> </ul>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파견단체에 서류를 제출함</li> <li>파견단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에 서류를 제출함</li> <li>사회보험당국은 서류를 접수, 확인, 처리 및 증명서를 발급함</li> </ul> <p><b>처리 시간: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충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가 단체에 서류를 제출함</li> <li>단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에 서류를 제출함</li> <li>사회보험당국은 서류를 접수, 확인, 처리하고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적용을 위해 시스템에 입력함</li> </ul> <p><b>처리 시간: 규정에 따라 적합하고 충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b></p>

### 보험 혜택에 대해:

본 협정은 법규정에 따라 복리후생 계산을 위해 양국 근로자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간을 중복 없이 누적할 수 있게 허락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본 협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Alert for professional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 한국과 베트남간 사회보험 협정 이행에 관한 지침

##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SI 가입 종료 및 SI 가입 기간 확인

### 1. SI 가입을 종료하는 대상:

- 근로자 해외파견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근로자 해외파견을 허락된 공공 비사업 단체와의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 기술 향상을 위해 인턴십 형태로 기업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 개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 2. 가입종료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 3. 종료 신청서류:

- **근로자의 경우 (해외근무 전 사회보험당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 ✓ TK1-TS 양식 신고서 ("한국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베트남 사회보험 납부를 종료함" 을 명확하게 기재함)
  - ✓ 한국에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 사본

- **단체의 경우 (근로자가 단체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 TK3-TS 양식 신고서 (" 베트남에서 SI 가입을 종료하는 근로자 목록" 을 명확하게 기재함)
- ✓ 한국에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 사본
- ✓ 근로자 사용보고서 및 양식 D02-LT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자 목록

### 4. 근로자가 SI 가입을 종료하는 대상이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 당국은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된 사회보험료 금액을 환급 처리한다.

### 5. 서류를 받은 후 베트남 사회보험당국은 다음을 수행한다:

- ✓ 의무사회보험료 징수를 중단
- ✓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
- ✓ 사회보험수첩을 반납
- ✓ 납부된 금액 (있는 경우) 환급 처리

## 딜로이트의 권고사항

기업과 개인은 본 협정 이행에 관한 규정과 절차,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또는 한국에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를 검토하여 협정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을 결정한다.
- 협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기록 및 정보를 수집한다.
- 근로자가 제공한 서류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른 서류를 준비한다.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증명서를 신청/ 수령하기 위해 사회보험당국에 서류를 제출한다.

##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Alert for professional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